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통합 홍보공간 운영의무 등》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921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시공사 선정 시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 홍보공간 운영의무 (안 제29조제8항 등)	2
2.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건설업자 등의 개별적인 홍보 금지 (안 제132조제3항 신설)	5
3. 개별적인 홍보 금지를 위반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시공사 선정 취소 명령 등(안 제113조의2 및 제132조의2)	7
4. 계약 체결 등 위반행위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 확대 및 설치 의무화 (안 제132조제4항 등)	10
5. 과태료(안 제14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1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준호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1. 27.

다. 회 부 일 : 2024. 1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시공자 선정 관련 비리 방지를 위하여 의무 개최되는 합동설명회 이외에는 입찰참여자의 개별 홍보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정비사업 계약 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막대한 수주 이익 및 법정 홍보수단 부족으로 불법 홍보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홍보수단이 합동설명회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홍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계약 관련 비리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입찰참여자의 법정 홍보수단으로 통합 홍보공간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법정 홍보수단 외 개별 홍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비사업 관련 계약 비리를 억제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8항 및 제132조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시공사 선정 시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 홍보공간 운영의무 (안 제29조제8항 등)

현행	개정안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사 선정 등) ① ~ ⑦ (생략)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사 선정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조합은 제4항에 따른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u>개최</u> 하여야 한다.	⑧ ----- ----- ----- ----- ----- <u>개최</u> <u>하고 통합 홍보공간을 운영하여야</u> -. -----
⑨ 제8항에 따른 <u>합동설명회의 개최 방법이나 시기</u>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⑨ ----- <u>합동설명회의 개최 방법·시기 및 통합 홍보공간의 운영 방법·절차</u> ----- -----.
⑩ · ⑪ (생략)	⑩ · ⑪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통합 홍보공간 운영 및 시공사 선정 관련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 제29조제8항·제9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현행법 제29조제8항1)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사 선정 등) ④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⑧ 조합은 제4항에 따른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합동설명회의 개최 방법이나 시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경쟁입찰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려는 조합은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의 공고에 따른 입찰마감일 다음날부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총회 개최일까지의 기간 동안 합동 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함.

합동설명회 개최 의무는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불투명한 홍보행위 등에 따른 과열 경쟁 및 혼탁을 방지할 목적으로²⁾ 2023년에 개정(법률 제19848호)을 통하여 도입된 것임.

개정안은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는 조합이 통합 홍보공간을 운영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국토교통부고시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제4항³⁾에 따른 통합 홍보공간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의2(시공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합동설명회) ① 조합은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합동설명회(이하 “합동설명회”라 한다)를 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른 경쟁입찰의 공고에 따른 입찰마감일 다음날부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총회 개최일까지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② 조합은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합동설명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합동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설명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65호)

제34조(건설업자등의 홍보) ① 사업시행자등은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마감일 다음날부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일까지의 기간 동안 건설업자등의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등은 총회에 상정하는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시공능력, 공사비 등이 포함되는 객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 사본을 토지등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해 게시할 수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2840호) 검토보고 75-76면 참조

로 상향하면서 재량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 합동설명회 외에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공식적인 홍보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개별 홍보행위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일률적인 공간 운영으로 인하여 조합의 과도한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통합 홍보공간의 운영을 조합의 재량사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65호)

제34조(건설업자등의 홍보) ④ 사업시행자등은 제1항에 따른 합동설명회(최초 합동설명회를 말한다) 개최 이후 건설업자등의 신청을 받아 정비구역 내 또는 인근에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을 1개소 제공하거나, 건설업자등이 공동으로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간 1개소를 홍보공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자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등이 제공하거나 지정하는 홍보공간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홍보할 수 있다.

⑤ 건설업자등은 제4항에 따라 홍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홍보를 수행할 직원(건설업자등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홍보직원"이라 한다)의 명단을 사업시행자등에 등록하여야 하며, 홍보직원의 명단을 등록하기 이전에 홍보를 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홍보직원이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등은 등록된 홍보직원의 명단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수 있다.

2.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건설업자 등의 개별적인 홍보 금지 (안 제13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제29조제8항에 따른 합동설명회 및 통합 홍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적인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통합 홍보공간 운영 및 시공사 선정 관련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 제1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개정안은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합동설명회 및 통합 홍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부고시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4조제4항 및 제34조제3항4)에 따른 개별적 홍보의 금지를 법률로 상

4)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65호)

제14조(입찰참여자의 홍보 등) ④ 입찰에 참여한 자는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홍보관·쉽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개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호·문언·음향·영상 송신행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4조제3항에서 같다)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입찰 무효 등) ① 제14조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하는 개별적인 홍보를 하는 행위가 적발된 건수의 합이 3회 이상인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입찰이 무효로 됨에 따라 단독 응찰이 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향하여 명시함으로써 시공사 선정에 둘러싼 비리를 차단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과도한 수주 경쟁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하고 유효한 경쟁입찰로 본다.

제34조(건설업자등의 홍보) ③ 건설업자등의 임직원,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은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개별적인 홍보 금지를 위반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시공사 선정 취소 명령 등(안 제113조의2 및 제132조의2)

현행	개정안
제113조의2(시공사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① 시·도지사(해당 정비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3조의3에서 같다)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해당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에게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사이의 계약서상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사 선정 취소의 명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u>제1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u> 위반한 경우 2.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용역업체의 임직원(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고용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u>제132조제1항을</u> 위반한 경우	제113조의2(시공사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① ----- ----- ----- ----- ----- ----- ----- ----- ----- ----- ----- ----- ----- 1. -----제1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어느 하나를----- 2. ----- ----- ----- ----- ----- -----제13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현행	개정안
② · ③ (생략) 제132조의2(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감독 의무)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하여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교육, 용역비 집행 점검, 용역업체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2조의2(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감독 의무) ----- ----- -----제132조제1항 및 제3항----- ----- ----- -----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통합 홍보공간 운영 및 시공자 선정 관련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 제1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개정안은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에게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하여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안 제132조제3항⁵⁾을 위반하지 않도록 교육, 용역비 집행 점검, 용역업체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안 제132조의2),

해당 정비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도 하여금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①안 제13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합동설명회 및 통합 홍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아닌 개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③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제29조제8항에 따른 합동설명회 및 통합 홍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적인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적인 홍보를 하거나 ②안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안 제13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해당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사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3조의2).

개정안은 안 제132조제3항에 따른 개별적 홍보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안 제132조제3항의 신설을 전제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업자가 고용한 용역업체의 개별적인 홍보도 함께 제한할 필요가 있고, 개별적 홍보행위를 금지하려는 안 제132조제3항의 이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4. 계약 체결 등 위반행위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 확대 및 설치 의무화(안 제132조제4항 등)

현행	개정안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① · ② (생략) <u><신설></u> ③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u>설치·운영할 수 있다.</u>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④ ----- -----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4항----- ----- -----.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통합 홍보공간 운영 및 시공사 선정 관련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 제1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개정안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함)가 안 제132조제3항6)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업무도 수행하도록 하면서,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③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제29조제8항에 따른 합동설명회 및 통합 홍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적인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고센터 제도는 조합의 임원 선출이나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금품 제공 행위⁷⁾ 등을 예방·단속함으로써 조합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할 목적으로⁸⁾ 2023년에 법률 제19848호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어 202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신고센터가 개별적인 홍보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할 경우 시공자 선정을 둘러싼 비리를 차단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안 제132조제3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 제132조제3항의 신설을 전제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됨.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 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 ②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대납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6조의2(제안이 금지되는 사항) ① 법 제13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이자나 제안 시점에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
- ② 법 제13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대납을 말한다.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2840호) 검토 보고 78면 참조

국토교통부는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 확대에는 동의하면서도, 설치의 의무화에 관해서는 신고센터 제도가 2024년 6월부터 시행되어 운영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정비사업이 활발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설치 실익과 운영 효율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에 신중한 의견을 제시함.

5. 과태료(안 제14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신설> <신설> 3. (생략) ② . ③ (생략)	제140조(과태료)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제13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적인 홍보를 한 자 4. 제132조의2에 따른 조치를 소홀히 한 자(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통합 홍보공간 운영 및 시공사 선정 관련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 제1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개정안은 안 제132조제3항⁹⁾을 위반하여 개별적인 홍보를 한 자 또는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안 제13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안 제132조의 2¹⁰⁾에 따른 조치를 소홀히 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③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제29조제8항에 따른 합동설명회 및 통합 홍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적인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제132조의2(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감독 의무)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하여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교육, 용역비 집행 점검, 용역업체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려는 것임.

개정안은 안 제132조제3항에 따른 개별적 홍보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안 제132조제3항의 신설을 전제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아울러, “조치를 소홀히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안 제140조제1항제4호)할 경우 조치는 하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범에 한정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를 행위 태양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¹¹⁾¹²⁾

국토교통부는 개별적 홍보행위를 금지한 안 제132조제3항의 이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576

11) 「항공보안법」

제5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5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12)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할 경우 현행법 제138조제2항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벌칙) ②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제132조의2에 따른 조치를 소홀히 하여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